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4
------------	------

2023년 12월 1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1. 제안이유

- 조례 내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취학연령(만6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연령(만25세미만)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시행 '23.6.28.)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제7조의 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탈북학생 연령 규정(만 나이 방식) 및 「행정기본법」 개정(시행'23.6.28.)에 따라 조례 내 나이 표기에서 “만” 표시 삭제 (안 제2조)
 -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 6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

III.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234호로 제출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기본법」 개정(시행' 23.6.28.)에 따라 “탈북학생”의 나이를 만6세이상 만25세 미만으로 한 나이 표기에서 “만 ” 표시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고 「병역법」(제2조)¹⁾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1)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생략)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를 뺀 ‘연 나이’ 를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표-1] 나이 계산의 예시(1995.9.10.생)

연도		2022년		2023년	
기준일		2022년9월10일 이전	2022년9월10일 이후	2023년9월10일 이전	2023년9월10일 이후
연령 (세)	세는나이	28	28	29	29
	만나이	26	27	27	28
	연나이	27	27	28	28

- 그러나 사회에서 이러한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²⁾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하였습니다.³⁾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행정기본법」에서도 ‘만 나이’ 계산 규정과 표시 규정을 명문화하여 2023년 6월 28부터 동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⁴⁾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만 25세미만)을 ‘만 나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만 나이’로 통일…심하면 두 살 차이, K나이 사라진다. 중앙일보, 2022.4.12.

3) “내년엔 나이 한두살 줄어든다...인수위 만 나이 통일 추진(종합)”, 연합뉴스, 2022.4.11.

4)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6세 이상 만25세” 을 “6세 이상 25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u>만6세 이상 만25세</u>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 ----- ----- ----- <u>6세 이상 25세</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